희망씨앗기금 강연

십대여성들을 성착취에서 지키기 위하여

- 아청법 개정운동을 중심으로 -

2022. 8. 23.

십대여성인권센터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www.teen-up.com
Teen-up.com@daum.net
02-6348-1318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안녕하세요?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입니다.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Cho, Jin-Kyeong)

1.성매매 피해여성을 처음 만나다.

- 2001년 부터 현재까지 22년차 성매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외국인여성 뿐만 아니라, 최고령 63세 여성부터 10세 아동까지 지원해 왔음.
  기지촌, 성매매집결지, 안마시술소, 룸살롱 등 전국 각지와 섬에 이르기까지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출 과정에 함께 했음.

- 한국사회의 성매매관련 법령은 일제강점기 공창제를 실시, 해방후에는 공창제를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통해 미군정에 의해1946년 법령 제70호「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법공표와 공창제 폐지,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1996년 윤방법 일부 개정,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 전, 윤방법 상황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처벌되어야 했음.
  ex)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란 A는 학교갈 무렵 고아원 원장이 자신의 집에 A를 식모로 들여 숙식을 제외하고 일체 보수를 주지 않은 채 학교도 보내주지 않았다. 성인이 되자 A는 도망쳤고, 월 200보장, 가족같은 분위기, 초보자 환영 등의 구인모집 전단을 보고 전화해 알선자를 만났지만 알선자에 의해 가게된 평택의 성매매업소에 팔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다. 돈은 다른 일을 해서 갚겠다고 내보내 달라고 애원했지만 A는 결국…

- 더 이상 성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망나온 여성, 업주는 여성의 차용증을 근거로 사기로 고소, 고소장을 근거로 경찰이 수사진행하지만 주소지에 여성이 없음, 전국에 수배, 수배중 검거된 여성은 업주가 경찰에게 손을 써서 본인이 잡힌 걸로 생각, 경찰차를 타고 고소된 경찰서로 이송, 업주와 대면, 사기가 인정된 여성에게 고소취하를 이유로 여성의 선불금에 더해 합의금을 얹어 다시 차용증을 쓰게 하고, 다른 업소에 넘겨 그 돈을 회수하는 방식 일반적 수법

2.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 2000년, 2002년 군산의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2번의 화재사건, 성매매 여성 10여명이 사망함,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현실이 드러남. 이 사건 후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았고,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됨.
-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은 국회를 통과, 9월 시행됐을 때, 대대적인 반대에 직면하게 됨. 남성연대와 한터협의 헌법소원 등
- 성매매방지법 vs 윤방법
  윤락/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위, 성매매란 용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로 보고 불법화함. 따라서 윤방법에서는 돈을 매개로 성행위를 한 여성을 윤락녀라하여 처벌하는데 중점, 성매매방지법은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업주에 대한 처벌이 중점이 됨.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신설하여 강요, 감금, 미성년자,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서 피해자가 발생함을 법안에 포함시켰고, 피해자는 국가가 보호, 자립 지원하도록 함.

2.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 성매매방지법 vs 윤방법

윤방법은 윤락녀 처벌을 통해 사회정화 목적,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을 처벌,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 함. 성매매방지법은 몰수,추징 규정을 두어 강력한 불법업소 폐쇄의지를 법안에 포함시켰으나 제대로 적용 안되고 있음.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한국사회 성산업은 해외원정 성매매, 해외 섹스투어, 성매매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변화양상 나타남과 동시에 국내 성매매 업소는 집결지 폐쇄 중심의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다른 산업형 성매매업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영업, 새로운 형태의 변형적 성매매업소 우후죽순 개업 동시에 인터넷 기술과 접목시켜 업소 홈페이지, 업소 이용 후기 등을 통해 인터넷 상 성매매업소 정보 제공, 교환 등의 디지털 매개 성매매가 점점 확산됨.

3. 현재

2010년 이후 IT 기술과 결합한 성매매 산업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고 주요 성적욕망의 대상을 어린 십대여성과 다양한 성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성산업이 IT 기술과 결합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남성사회의 욕망이 더 이상 성숙한 여성의 몸에 국한되지 않는 다는 점임. 정체성으로 고정되어 있던 성은 더 이상 고정된 성정체성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 욕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미성숙한 여성의 몸에 대한 욕망은 봉인이 해제되었으며, 여성의 성과 미성숙한 여성의 성, 기타 다양한 성이 상품으로 목록화되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성매수자들의 욕망은 더욱 극대화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급속히 확장되고 있음. 기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고전적 성매매 시장과 가상현실이 무한 확장되고 있는 성매매 시장은 이미 그 규모에 있어서 거의 비등한 상황이며, 가까운 미래에 가상현실세계의 성매매 시장은 현실 세계보다 훨씬 커질 것은 기정 사실이 되었음. 피해자의 규모와 피해의 심각성, 영구성은 상상을 초월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성매매를 더 이상 대등한 위치성을 가진 사람들간의 거래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보아선 안됨. 이것이 20여년간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내린 결론임.

4. 개정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 이 법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 ·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정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아청법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장애아동에 대한 간음 등, 상해·치상, 살인 ·치사, 아동·청소년이용음락물 제작·배포, 매매행위, 성을 사는 행위,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 음란물제작, 배포 등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규정하여 엄히 다루고 있지만, 성매매의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두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니라고 구별하고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하고 있었다.

4. 개정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 이는, 소위 자발과 강제라는 도식을 통해 피해자를 걸러내고 강제적이었다면 피해자로 보호하고, 자발적으로 보여진다면 범죄가담자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2분화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자들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용돈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동이 자발적인 것처럼(성매매 정황으로) 상황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신고를 피하고 비난을 최소화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일쑤였다.

- 아동·청소년을 자발과 강제로 나누어 피해자와 범죄가담자로 나누는 이러한 조치는 성착취자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성착취자들에 의해 학교나 부모에게 알리겠다거나, 너도 처벌받는다는 등의 협박을 받게되어 신고자체를 막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는 아동·청소년이 대가를 바라고 성을 사는 행위의 자발적인 대상이 되었다고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가장 가까운 보호자까지도 자녀를 피해자로 보지 못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을 비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더욱 심각한 피해 상황에 놓이게 하여왔다.

5.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에 대한 통합적인 예방, 지원, 치유 활동과 성착취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십대여성의 성인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사이버또래상담사업, 아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 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다.

주요활동은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개인방송 등 사이버상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제공하고, 본 센터의 법률, 의료, 심리지원단을 통해 법률.의료.심리 상담과 부모상담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 자활을 위해 교육/주거/학업/일자리 등을 연계하고 있다.

나아가 사이버 상의 각종 성매매 알선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 조장 세력에 대한 경계와 신고활동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과 제도,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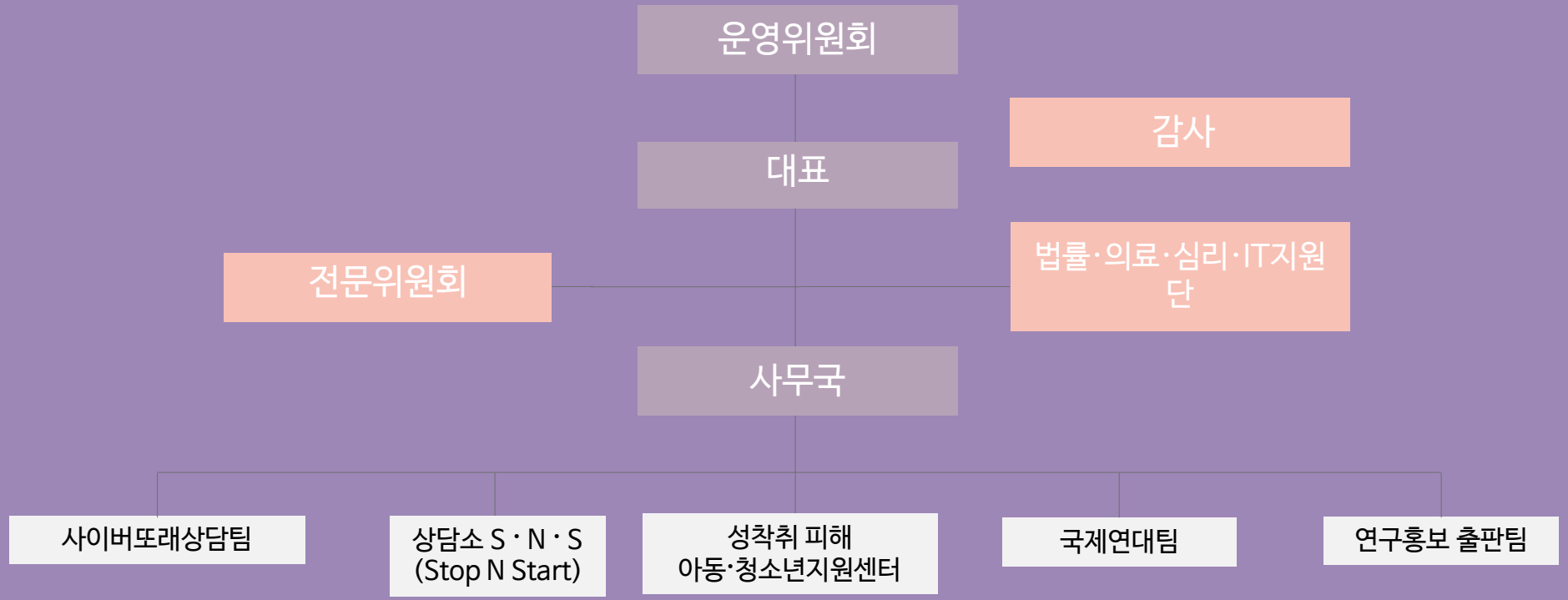

계	대표	사무국장	사이버또래 상담팀	상담소 S·N·S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14	1	1	6	3	3

계	법률지원단	의료지원단	심리지원단	IT지원단 (2021년 12월 1기 활동종료)
81	52	14	9	6

6. 십대여성들을 성착취에서 지키기 위하여 : 아청법 개정운동을 중심으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연구 모임을 통해 ‘아청법 개정안’ 초안 작성
  2013년 1월 - 2015년 3월

1차 : 2013년 7월 15일(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워크샵

2차 : 2013년 10월 28일(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워크샵 2

구성기관 :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탁틴내일

- **성고문당했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했다.**

2013년 O월, 아동·청소년 '가' (만 16세)는 성매수자(33세)로부터 성폭행, 감금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지식인에 올려놓았고, 이것을 본 센터가 연락을 하여, '가'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경찰 수사 도중 성범죄자가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묻자, 경찰은 수사중 일어난 일이라며 답변을 거부하였다. 이에 본센터는 진상규명, 엄중수사, 성범죄자에 대한 지명수배,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기 위해 경찰청, 국민신문고,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상황에서 성폭력, 감금, 폭행 등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성폭력 전담 검사는 아동·청소년이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폭력 등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받고 SM play를 전제로 조건만남을 했던 것인지를 의심하고 체포영장을 반려, 보강수사를 지시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성매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여 체포영장을 반려하여 성범죄자가 도주한 사건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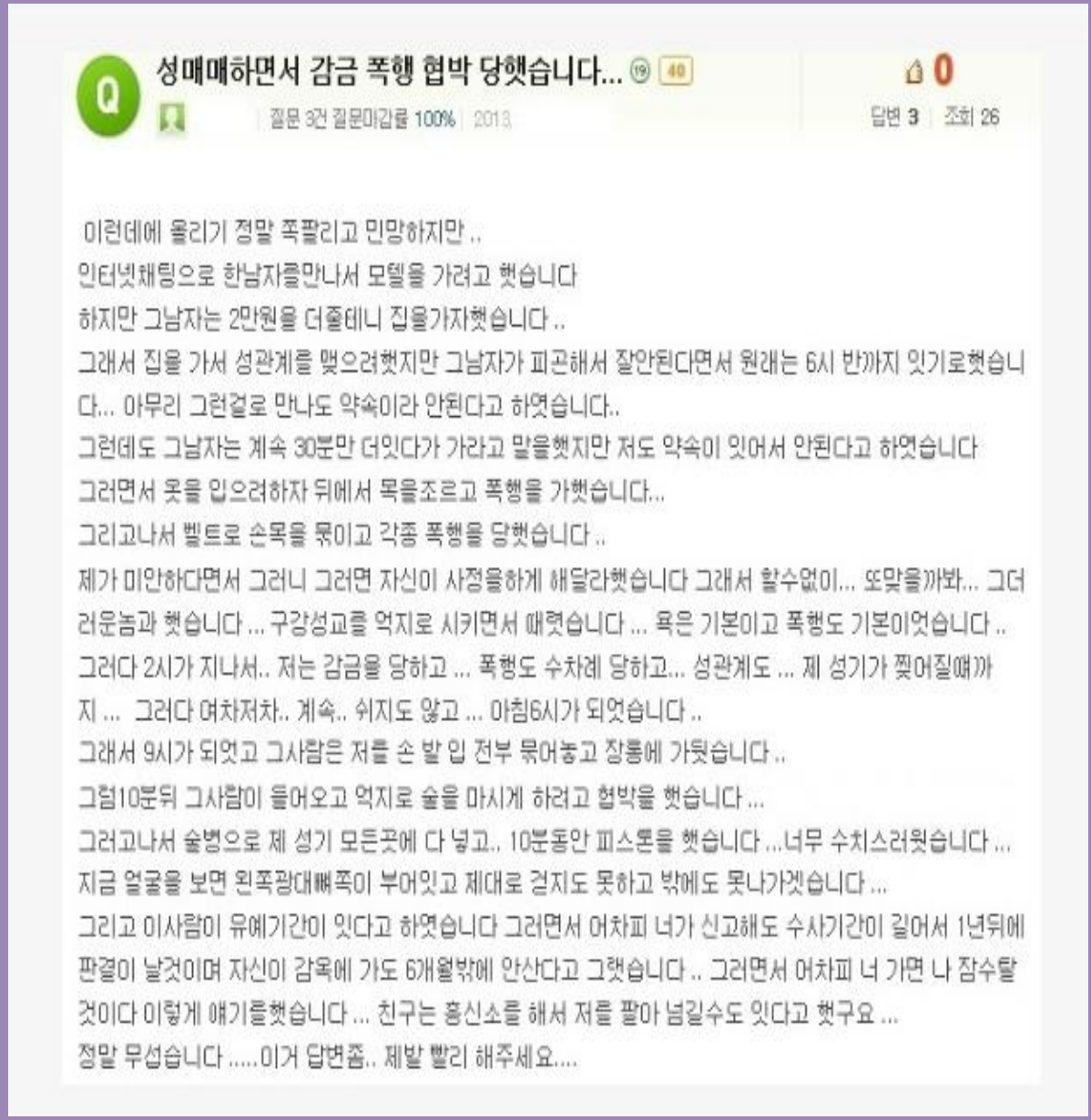

성매매하면서 감금 폭행 협박 당했습니다... 40

0

질문 3건 질문마감률 100% 2013

답변 3 조회 26

이런데에 올리기 정말 쪽팔리고 민망하지만 ..
인터넷채팅으로 한남자를만나서 모텔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남자는 2만원을 더줄테니 집을가자했습니다 ..
그래서 집을 가서 성관계를 맺으려했지만 그남자가 피곤해서 잘안된다면서 원래는 6시 반까지 있기로했습니다... 아무리 그런걸로 만나도 약속이라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남자는 계속 30분만 더있다가 가라고 말을했지만 저도 약속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입으려하자 뒤에서 목을조르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벨트로 손목을 묶이고 각종 폭행을 당했습니다 ..
제가 미안하다면서 그러니 그러면 자신이 사정을하게 해달라했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또맞을까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 구강성교를 억지로 시키면서 때렸습니다 ... 욕은 기본이고 폭행도 기본이었습니다 ..
그러다 2시가 지나서.. 저는 감금을 당하고 ... 폭행도 수차례 당하고... 성관계도 ... 제 성기가 찢어질뻔까지 ... 그러다 여차저차.. 계속.. 쉬지도 않고 ... 아침6시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9시가 되었고 그사람은 저를 손 발 입 전부 묶어놓고 장롱에 가뒀습니다 ..
그럼10분뒤 그사람이 들어오고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려고 협박을 했습니다 ...
그러고나서 술병으로 제 성기 모든곳에 다 넣고.. 10분동안 피스톤을 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
지금 얼굴을 보면 왼쪽광대뼈쪽이 부어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밖에도 못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이사람이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너가 신고해도 수사기간이 길어서 1년뒤에 판결이 날것이며 자신이 감옥에 가도 6개월밖에 안산다고 그랬습니다 .. 그러면서 어차피 너 가면 나 잠수탈것이다 이렇게 얘기를했습니다 ... 친구는 흥신소를 해서 저를 팔아 넘길수도 있다고 했구요 ...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답변좀.. 제발 빨리 해주세요....

-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청소년 성매매 실태 증인 참석’** 2013년 11월

참석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청소년 유해매체 접촉 실태와 대책’ 토론회** 2014년 6월 12일(목)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이 토론회를 통해 처음으로 성매매 유인·알선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문제제기

-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초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매개

채팅·커뮤니티 사이트
(세이클럽, 하늘사랑, 토크온, 플레이 메이트, 네이버 카페 등)

- **채팅 사이트를 통한 성착취 제안**
  : 제 3자가 대화 내용을 볼 수 있음

- 사이버또래상담 활동을 통해 예방, 구조, 지원함

- **2014년, 김해여고생 살해사건발생**

2014년 김해 여고생 A양이 가출 한 후 20대 남성 3명과 15살 또래 소녀 4명에게 성매매 강요, 구타와 학대를 당하다 숨지자, 증거인멸을 위해 얼굴에 불을 지르고 땅에 묻고, 시멘트를 부어 범행을 은폐하려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 범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고, 특히 가해자 들 중 십대 소녀들이 있었고, 이들이 A양의 죽음에 상당히 가담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전체를 분노하게 했고, 소년법 폐지 주장의 한 원인이 되었다.

- **김해여고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2014년 7월 - 2014년 12월

재판모니터링, 의견서 제출

아청법 상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어떻게 신고를 막았는지 드러내는 사건

-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아청법 대상청소년 개념 관련 증인 참석'** 2014년 10월 24일

참석자: 박숙란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 2014년도이후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 PC 중심의 채팅 사이트 → 스마트폰 채팅 어플 형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매개** 변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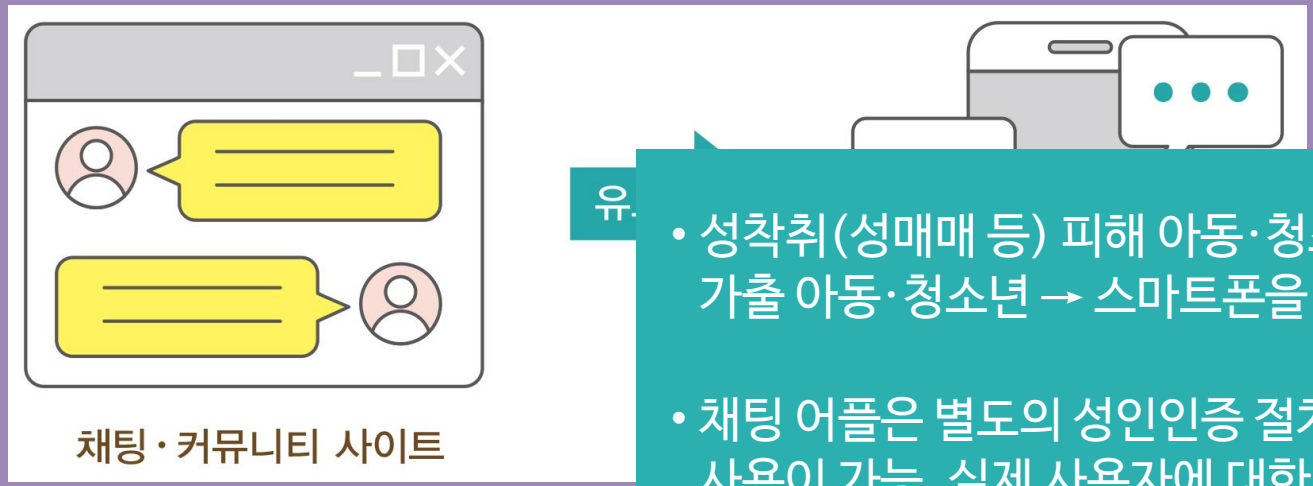

채팅·커뮤니티 사이트

유

-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의 유형에 큰 변화.
  가출 아동·청소년 →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모든 아동·청소년

- 채팅 어플은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가 없고, 임의로 성별과 나이만 입력하면 사용이 가능, 실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발생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었음.

- 대화조차 상대방이 채팅방을 나갈 경우, 삭제되는데 이러한 대화의 휘발성은 범죄에 악용되고 성매수자가 증거를 남기지 않는 유리한 상태가 됨.

18

- **2015년 관악구 모텔 14세 소녀 살해사건 발생**

2015년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성매수자가 스마트폰 채팅엡 '즐O'을 통해 14세 소녀를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매수 한 후 소녀의 입을 돈을 주지 않으려고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1:1 성매매로 알려져 있어, 자발적이라고 여겨지던 상황에서 알선범죄자들의 존재를 정확하게 드러내준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처참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 결성** 2015년 4월 20일 부터

(가칭)청소년 성매매 문제 공동대책회의 (십대여성인권센터)로 첫 모임 후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으로 명칭 확정함.

재판 모니터링, 알선자 처벌 강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서명지 국회 전달 등 활동

- **아청법 일부 개정안 발의(1차)** 2015년 8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
- 보호처분 규정 삭제
-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규정 신설

-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촉구 1인시위 100일 기자회견**

2015년 10월 27일(화) 국회 앞

- **십대여성인권센터 아청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5년 10월 19일(화)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2층 트리스타 대회의실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 좀 해봅시다!

-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

- **십대여성인권센터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2016년 3월 23일(수) 재단법인 동천 회의실

성매매 알선, 유인, 광고 인터넷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공동 고발 및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 **2016년, 지적장애 아동 하은이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2016. 4.) 판결선고

2014년 엄마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자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가출하기로 결심한 만 13세 지적장애아동인 '하은이'는 엄마가 심심할 때 채팅하라고 알려준 채팅 앱 '친구 OOO'를 통해 '재워줄 사람'을 찾았고, 그 후 성인 남성들에게 1주일 동안 성폭력을 당했다. 어렵게 '하은이'를 찾았지만 이상증세를 보이는 하은이를 성폭력 피해로 신고하였지만, 가까스로 찾은 6명의 가해자들은 강제나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수사되지 않았고, 성매매로 수사 진행되었으나 성매매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항고, 재수사 요청, 항소, 민사소송 지원 등 6년이상을 지원하였다.

2016년 '일명 하은이 사건'은 성매수자 6인이 모두 형사처벌 받고,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온 판결이다.

(1) 형사상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우선 피해 아동이 지적 장애가 있는 것 같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해 아동은 아청법상 자발적 성매매를 한 아동으로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이것의 의미는 아청법상 '대상청소년'은 '피해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며, 그럼에도 성매수자가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사회적 법익'을 위해서지 개인간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럼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성매수자는 이 피해 아동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2) 사건처리 결과

가해자	형사재판부	판결내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담당 변호사
양OO	서울동부지법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서울서부지법 1심 패소, 항소 일부 승소	배진수 변호사 이성환 변호사
하OO	서울북부지법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서울북부지법 일부승소	배수진 변호사
최OO	인천지법	징역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서울서부지법 승소	김병희 변호사
김OO	전주지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서울서부지법 1심 승소, 배상금 일부인정	최석봉 변호사
표OO	대구지검 재기수사 결정	2017. 12. 수사재기 2018. 4.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매매방지교육수강	2017년 대구지법 승소	서순성 변호사
이OO	서울동부지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법 1심 패소, 항소 일부 승소	기희광 변호사

(3) 드러난 문제점

- 왜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가 됐는지?
  -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하지 않고 가해자 개개인의 사건으로 수사하여 사건을 전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개별 사건으로 수사
  - 연령 및 장애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단순한 적용
  - 스마트폰 어플에 방을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발적 성매매 제안한 것으로 인지(대상청소년 개념 적용)
  - 떡볶이, 치킨 등을 얻어먹고, 모텔방비를 지원받았다는 점 등에서 성매매로 판단 그러나 피해아동이 가지고 있던 돈까지 빼앗아 모텔비를 가해자가 보태서 내고, 성폭력 후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대가성이 없다고 기소도 하지 않음.

- 성매매 사건이라 하여 초기 수사지원을 했던 해바OO 아동센터에서 모든 지원을 끊음 – 아동청소년에게도 성폭력과 성매수 범죄를 구분하는 지원시스템의 문제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국선변호인 제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에 대한 전문 지원 시스템 부재(상담소, 검경찰에 전문 부서 부재 등)
- 너무 약한 처벌 수위(벌금, 집행유예)

- **십대여성인권센터 '하은이 사건' 법률지원 및 항소, 기자회견 개최**

2016년 5월 16일(월) 기자회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항소 및 기자회견 취지: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 '하은이'를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규탄, 항소함.
총 178개 기관 연합

- **아청법 일부 개정안 발의(2차)** 2016년 8월 8일(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
- 보호처분 규정 삭제
-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규정 신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공동 고소 · 고발 기자회견

2016년 10월 11일(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공동고소·고발 기자회견
한국 YWCA연합회 강당

- 피고소·고발인 : 7개 채팅 어프릴케이션 운영자
- 고소인 : 피해 아동 ·청소년 2인
- 고발인 : 십대여성인권센터외 254개 기관

●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간**

2016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

●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2016년 11월 3일(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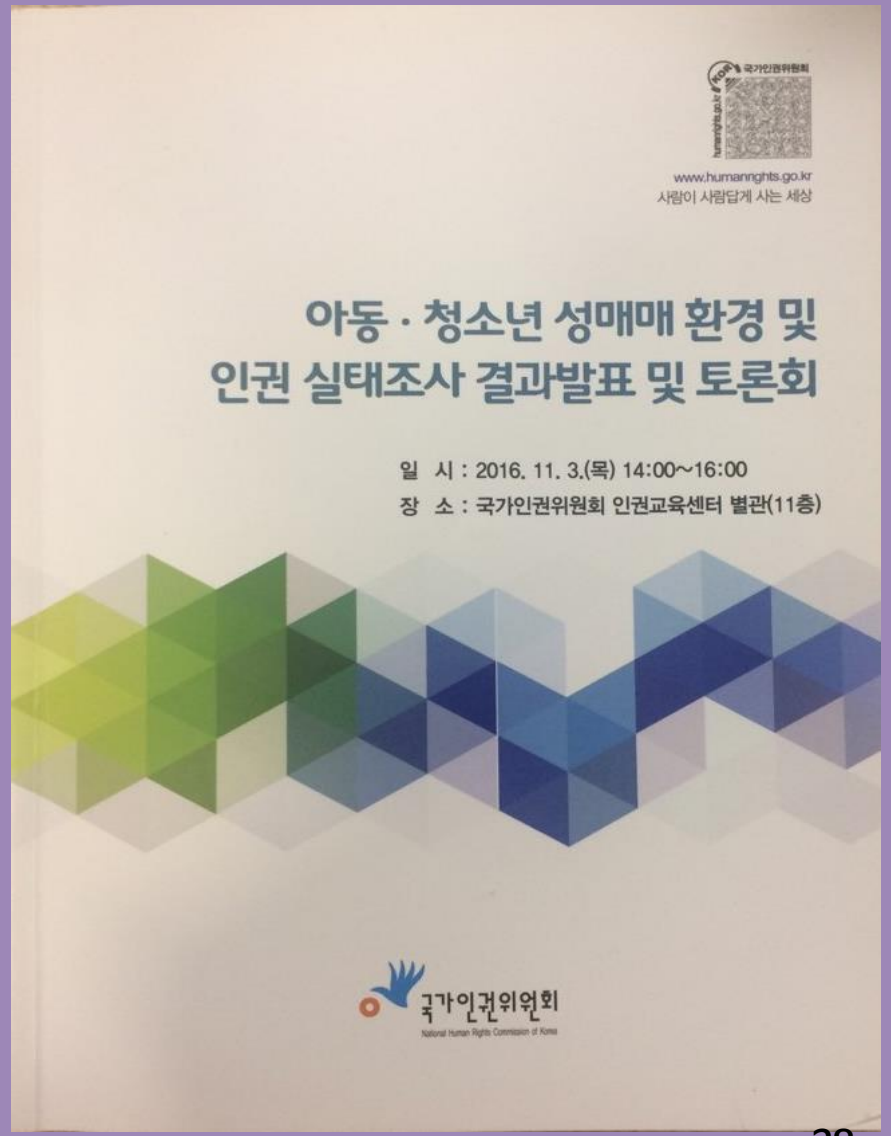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 이렇게 해봅시다!

  2016년 11월 21일(화) /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공동주최: 십대여성인권센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법무법인(유) 원, 사단법인 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UN 특별보고관 방문 요청을 위한 서한(E-mail) 발송**

  2016년 11월 11일 - 2016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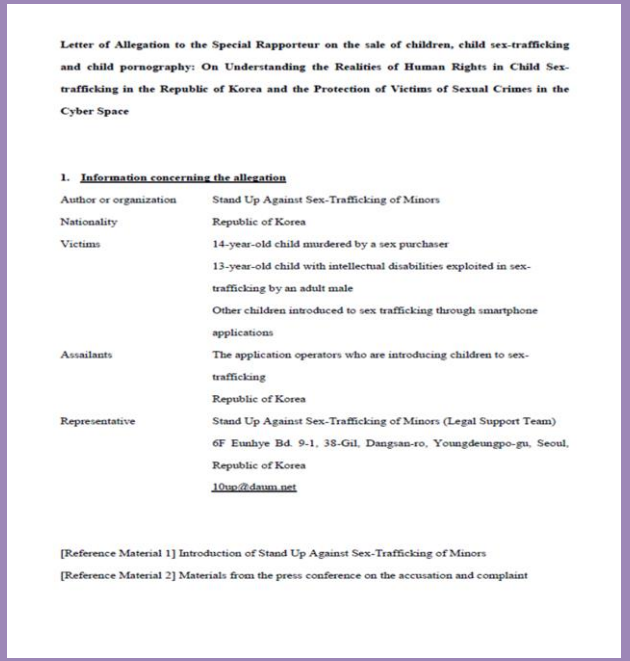

Letter of Alleg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sex-trafficking and child pornography: On Understanding the Realities of Human Rights in Child Sex-traffic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Crimes in the Cyber Space

1. Information concerning the allegation

Author or organization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Victims	14-year-old child murdered by a sex purchaser 13-year-old child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ploited in sex-trafficking by an adult male Other children introduced to sex trafficking through smartphone applications
Assailants	The application operators who are introducing children to sex-trafficking Republic of Korea
Representative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Legal Support Team) 6F Eunhye Bd. 9-1, 38-Gil, Dangsan-ro, You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10up@daum.net

[Reference Material 1] Introduction of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Reference Material 2] Materials from the press conference on the accusation and complaint

- **성매매 알선, 유인,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 전문가 초청 간담회**

2017년 4월 5일(수) 1차 전문가 초청 간담회

2017년 4월 19일(수) 2차 전문가 초청 간담회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의장 앞으로 아청법 개정 촉구 권고의견 표명

2017년 8월 1일(화)

- **2017 성매매 알선된 여중생 에이즈 감염사건**

2016년 알선자들에 의해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당한 여중생이 성매수 과정에서 에이즈가 감염 된 사실이 2017년 밝혀진 사건이다.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채팅을 주고받고, 기록이 오래 남지 않는다는 채팅 앱의 특성으로 이 여중생을 성매수 한 남성들의 신상파악에 실패했고, 여중생을 성매수한 가해자들 중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전체를 경악과 공포에 몰아넣은 사건이다.

-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용역 보고서 발간
  2017년 10월 31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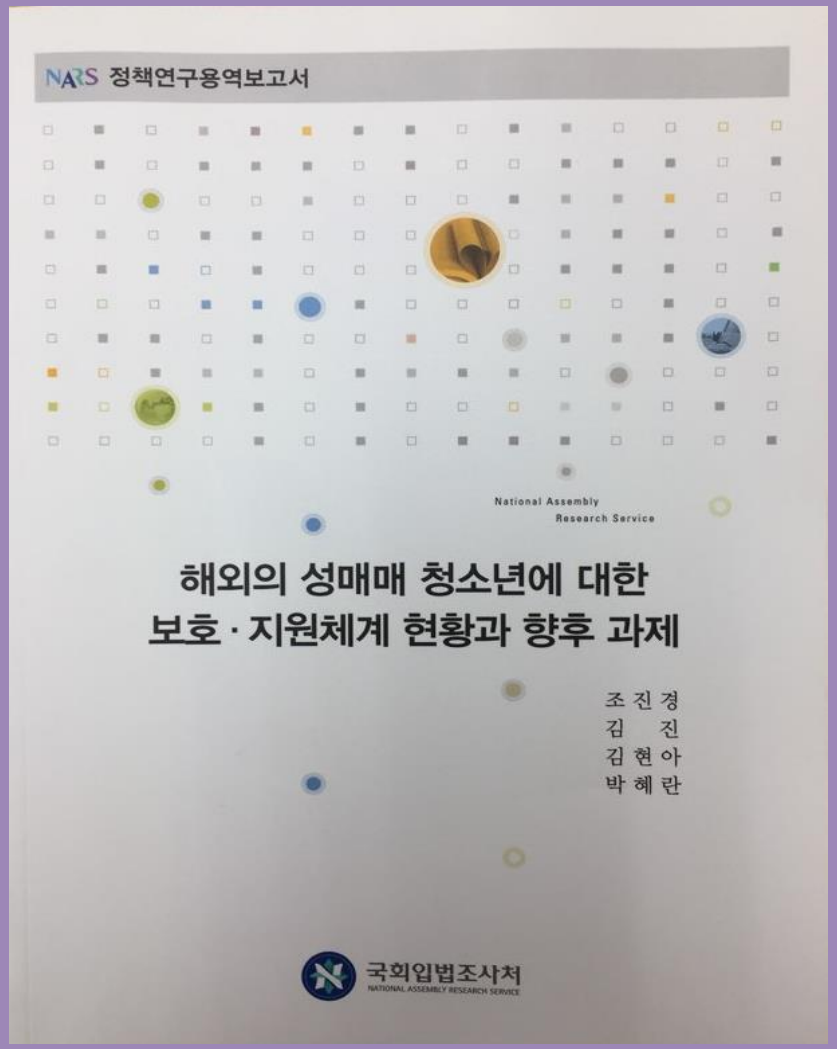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법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년 11월 23일(목)

- **2017년 12월 - 2018년 1월 아청법 개정 촉구 홍보영상**

  십대여성인권센터×닷페이스 영상제작 및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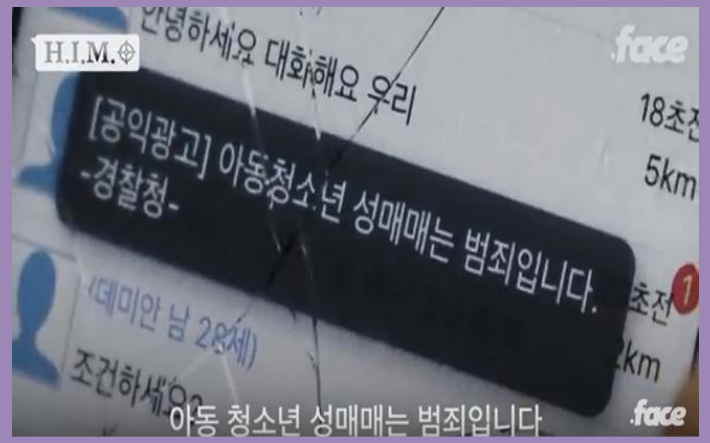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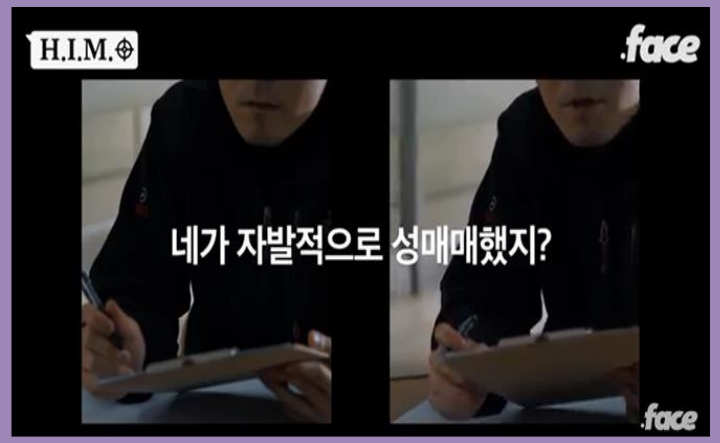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촉구를 위한 오프라인 정치행동

2018년 2월 8일 (목)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청법 개정안 통과함. 이때부터 국회 법률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됨

● 2017년도 이후

- 채팅 어플에 국한되지 않고 SNS, 메신저(카톡, 라인 등)로 매개가 확장되면서 문자, 부호, 음성, 보이스톡, 영상까지 융합.
- 친목이나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접근, 정서적 친밀감과 신뢰 관계를 형성할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쏟은 뒤, 협박의 수단인 개인 정보(이름, 나이, 거주 지역, 전화번호, 학교, SNS 혹은 메신저 계정 등)를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집.
- 이러한 '그루밍' 수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신체 사진/영상을 요구하고 신체 사진/영상을 받은 후 돌변하여 자신의 성적 대상이 되어주지 않으면 받은 사진/영상을 SNS나 웹하드에 게시하여 유포하겠다거나 학교나 친구,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성적 요구에 응해주어야 삭제해 주겠다고 함.

음 기출풀기전에 머리식히려고 들어왔던거였어

내 목소리 들으면서 자위안할래? ㅋㅋㅋ

자위할꺼면 들려주지 ㅎㅎ

하면 졸려서 별로 안하고싶으...ㅁ

그럼 기출파고와서 자위하고 잘래 기다릴께..

그게 아니라.. 니 이쁜몸 봐주겠다고지

평가가 아니라ㅋ 찍어 일단!

유두만 보이게 더 찍어봐 엄청 이쁘네 몸매

너 이제부터 차단하면 안좋은일 생길거야

이제부터 넌 내 노예야

?? 왜?

니 동영상 위디스크에 일단 올려볼까?

아니요.ㅠㅠ 잘못했어요..ㅠㅠ

씨발 셀카 하나 전신하나 쳐 보내라고

알게써요

너 말고 예전에 키우더 ㄴ노예년 17살이었는데

말 안들어서 걔네 학교페이지에 올려서 걔 퇴학당했어 씨발ㅋㅋ

그렇게 될래?

잘못했어요 안돼요ㅠㅠ

빨리 셀카

● 아동·청소년 성착취 확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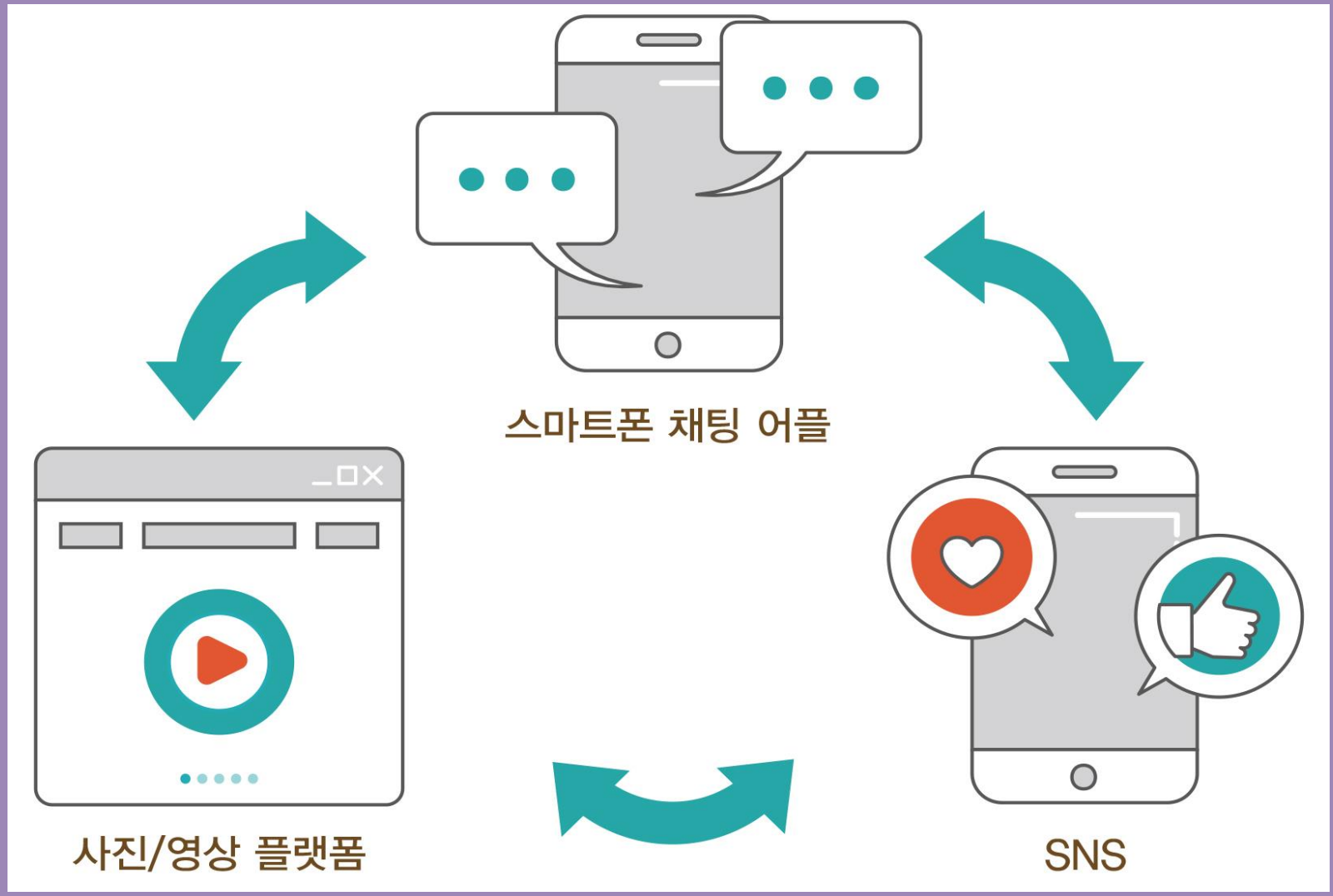

- 다양한 유포/협박 사례

“나 컴퓨터 전공자인데 네가 누군지 알아”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오빠는 너를 이해해“

“제 계정이 해킹 당했어요“

일탈계 “내가 도와줄께“

“날 좋아한다면 너의 몸을 보여줘”

“너 사진 합성할거야”

● 성착취 영상제작 강요의 구체적 형태

*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가 직접 써서 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전략) ..... 김oo은 라인 보이스톡을 하던 중 영상통화를 하라고 했… 싫다고 하자 내가 컴퓨터로 영화나 영상 CG처리 하는 일을 하는데 너가 누구인지 알아내어 저의 부모님과 주변사람들, 제가 아는 모두들에게 퍼트린다… 협박을 했… 너무 무섭고 겁이나 어쩔 수 없이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김oo은 저에게 옷을 벗으라 하며 핸드폰을 잘 볼 수 있도록 고정하라고… 이후 양쪽 가슴에 2개, 성기에 집게 1개를 꽂고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 두개를 입에 깊게 넣으라고 하며 얼굴을 보이게 하라고… 제가 “하,,얼굴은 안되요..”라고 말했지만 계속 강요하고 요도를 찾으라고… 요도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오줌 나오는 데라고 알려주며 계속 찾으라고… 저는 너무 아팠지만 너무 무서워 시키는 대로… 거기에 면봉을 넣으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아,," 라고 하며 아프다고 표현했지만 계속 강요를 하여… (생략) 몇 번의 시도에 면봉에 피가 묻어 이야기를 하자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였고, 면봉의 솜 부분이 떨어지려고 하자 하나 더 꺼내라고 해서 손이 너무 떨려 면봉을 떨어뜨렸는데 피고인이 “너 지금 던진 거냐? 미쳤냐? 똑바로 해라”라고 하여 다시 면봉을 꺼내 계속 시도를 하던 중 항문에도 면봉을 넣으라고 시켰… (생략)… 화를 내며 빨리해라 라는 말과 욕을 반복 하여 4개까지 넣었고 (생략)… 볼펜을 (생략)… 항문에 (생략)… 저는 너무 무서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생략) 저는 계속 기침과 헛구역질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넣어, 빨리 넣어. 토 안해? 빨리하라고. 씨발 미친년아 좆 되고 싶냐. 주변사람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 했… (생략) … 이후 톡으로 또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게를 꽂고 있는 저의 영상의 일부를 캡쳐 해서 보내며 “이거 올리겠다. 지금 인터넷 업로드 중이다. 잘 지내라. 한 이틀정도는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야. 너 인터넷에서 존나 유명해질 거야” 라며 웃으면서 이야기 했고……(생략)

●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폭력/성매매 사례

초등학생 아영이는 친구들과 놀다가 채팅 어플에 대해 듣게 되었다. 호기심에 채팅 어플을 내려 깔고 채팅방에 입장하자 수많은 쪽지들이 도착하였다. 재미있고 신기한 마음에 쪽지들을 열어봤지만 쪽지의 대부분은 용돈제공, 조건만남 요구였다. 단순 대화를 원하는 쪽지에 답장을 보내면서 남성 A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자신을 30대라고 소개한 A는 아영이에게 페이스북 아이디를 요구하였고, 별 생각없이 아영이는 아이디를 보내주었다.

그 후 A는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인사를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일어났어? 학교 가야지 우리 공주님”, “잠꾸러기~ㅋㅋㅋ”, 오후에는 “학교는 잘 다녀왔어?”, “오늘은 어떻게 보냈어?”라며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A`는 아영이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재학 중인 학교는 물론 관심사나 취향, 크고 작은 심리 변화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대화는 물 흐르듯 흘렀고 A는 SNS를 통해 기프티콘과 문화상품권을 보내며 아영이의 환심을 샀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데다 부모님이 안 계셨던 아영이는 “예쁘다” “보고 싶다”며 애정을 주는 A와의 대화가 즐거웠다. 그러던 중 A가 “여자친구와 해어졌는데 마음이 아프다. 너는 남자친구가 있어? 어디까지 가봤어? 뽀뽀는 해봤어?” 등의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려 했고 그에 아영이는 대화를 종료했다. 그러나 A는 끈질기게 아영이에게 쪽지를 보내고 포기하지 않았다.

40

●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폭력/성매매 사례

대화가 끊어지고 다시 심심해진 아영이는 결국 A와 다시 대화를 하게 되었다. A의 집요한 성적인 질문에 아영이는 마치 자신이 남자친구가 있고, 그 남자친구와 성적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 대화를 이어갔다. A는 아영이에게 자신과 한 번 만나 줄 것을 요청했다.

아영이는 성인 남성과 만나는 것이 겁이 나 거절했지만, A는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너무 외롭다.”며 매달렸다. 아영이는 “나는 초등학생이다.”라고 했지만 A는 “나는 초등학생 따먹는게(성관계 하는게) 로망이다”며 줄기차게 매달리며 졸랐다. A는 자신의 차안에서 자위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아영이를 졸라댔고, 호기심과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해주겠다’며 A와 만나기로 하였다.

처음 만난 날 A는 차안에서 아영이와 단둘이 있으면서 아영이에게 애원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시도하고 헤어졌다. 그후에도 A는 지속적으로 아영이가 좋아하는 딸기우유나 오징어 등을 사주고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수차례 성폭행하고 용돈을 제공하였다. 이런 일을 겪었지만 아영이는 이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A는 신고가 되었고, 경찰에 잡힌 후 A가 50대 남성으로 2명의 성인 아들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일까?

성매매 사건일까?

● 디지털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특징

1) 대부분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일어난다.

2)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3) 법적 권리 행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 협박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4) 그루밍 수법

5) 심각한 피해

6) 성범죄자들에게 안전성과 보안성이 더욱 강화되고 다양한 매체들이 융합되고 있는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수법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2018년 8월 28일(화)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오늘’展 개최**

2018년 11월 28일(화)

~ 12월 9일(일)

이화여대ECC 대산갤러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오늘’展 및 Here I am Here We are 토크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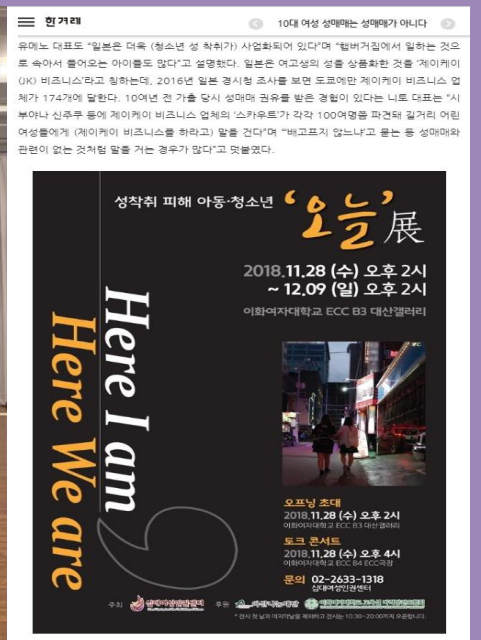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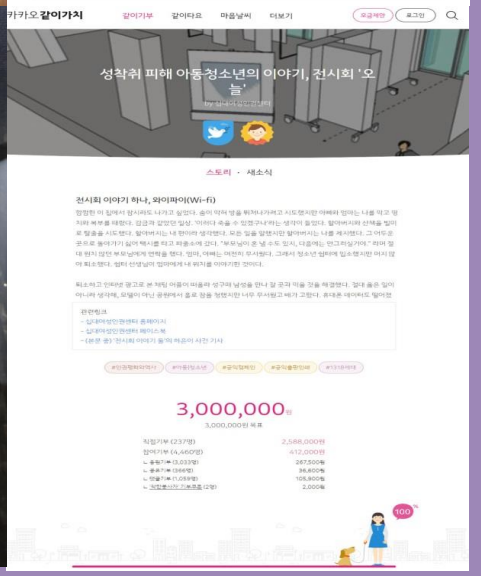

●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게임, 중고물품 거래, 유튜브 등 개인 방송)에서 성착취(성매매 등)로의 유인이 난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모든 온라인 공간에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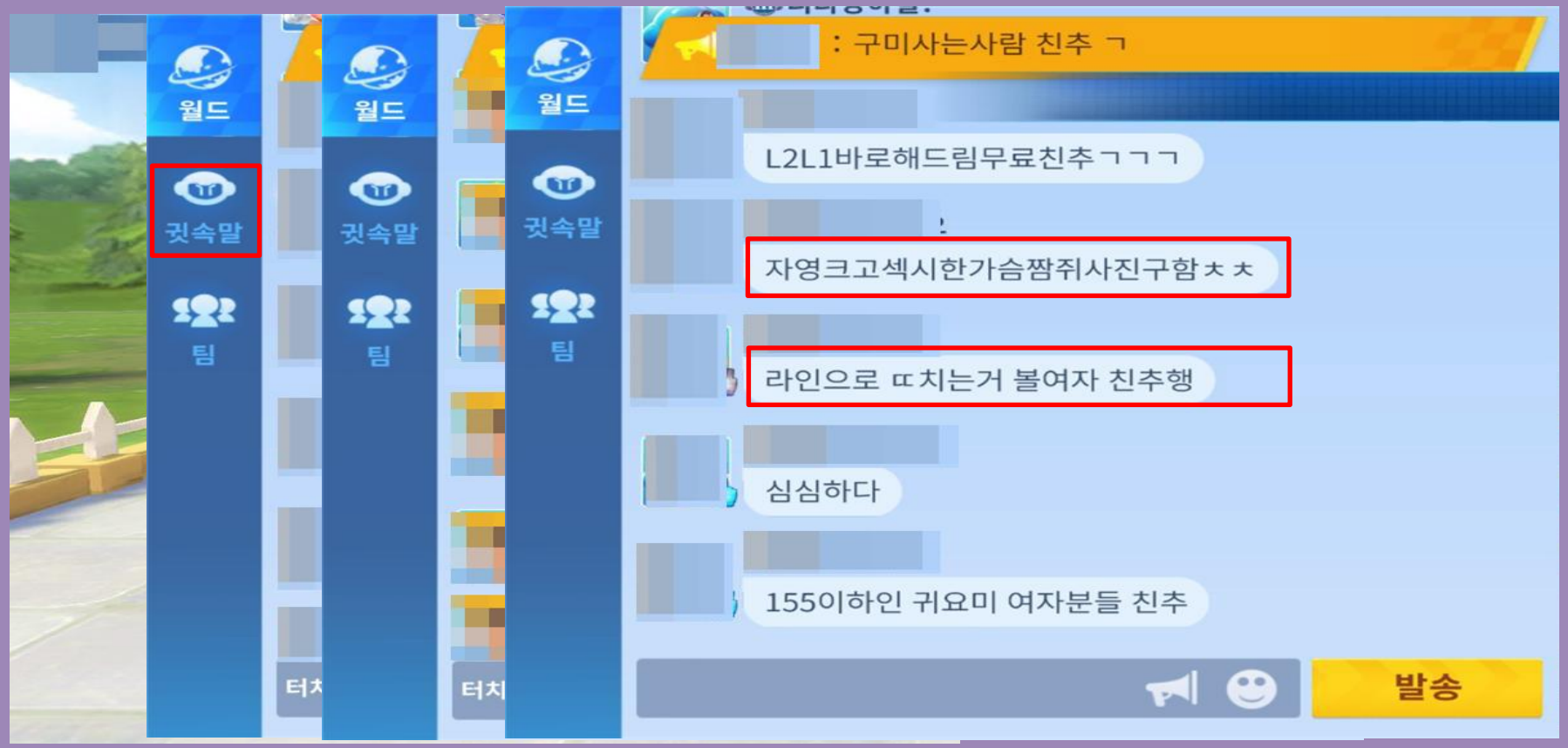

- **게임 내 아바타를 이용한 성착취 정황 모니터링(테*즈*너)**

팜제목: 야납/야한마사지/섻

- 야납 뜻: 야한 납치방이라고 하여 아바타를 쫓아가서 납치 상황극을 함.
- 야마: 야한 마사지의 줄임말.

- **메타버스 앱 : 제*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은 더욱 촉진됐고,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고 대면하지 않으면서 소통이 가능한 최적화된 매체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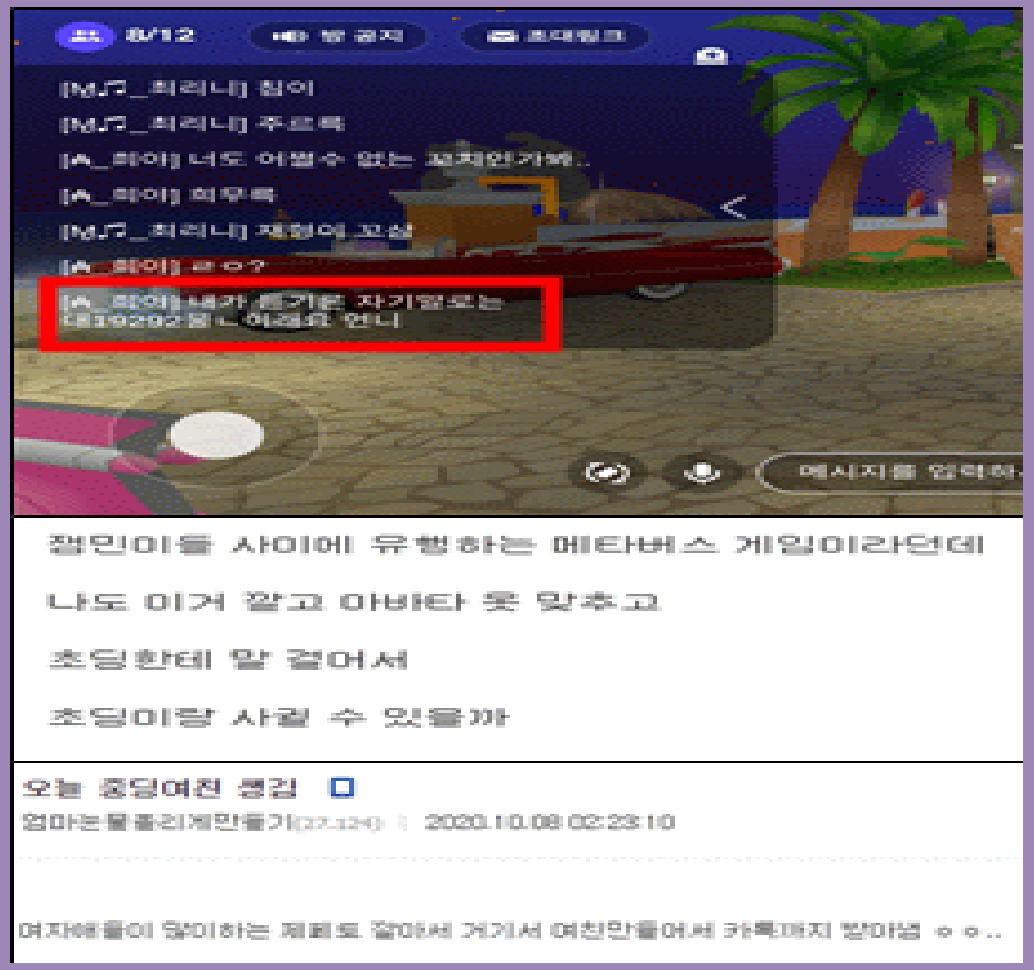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 스마트폰 채팅 어플 내 성매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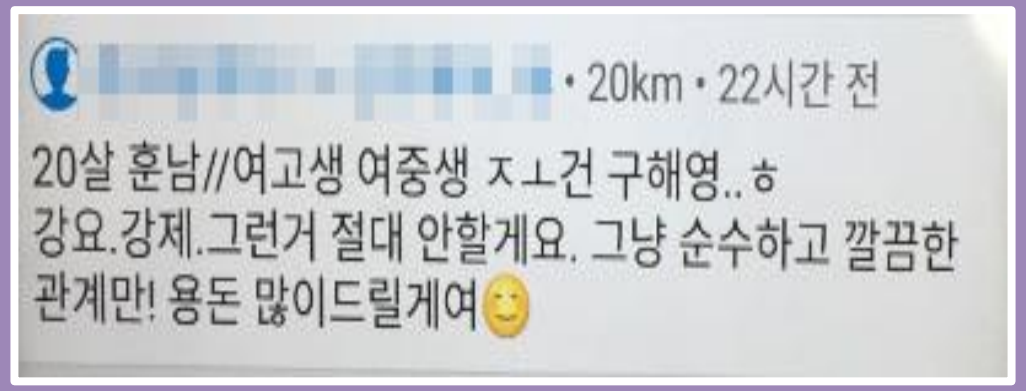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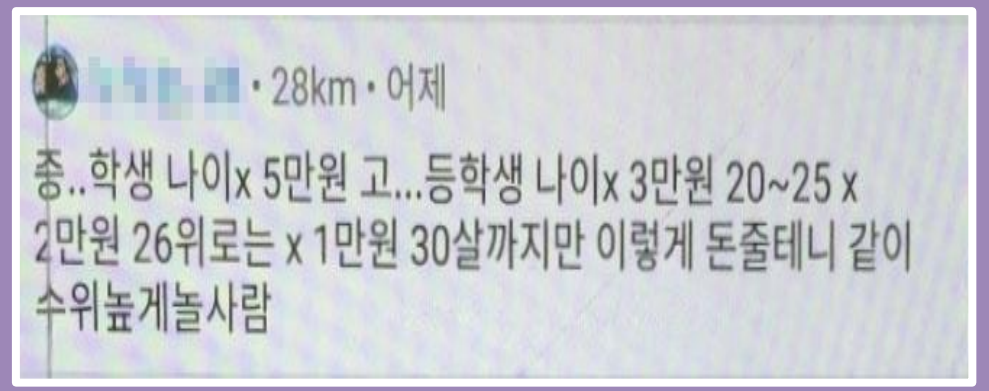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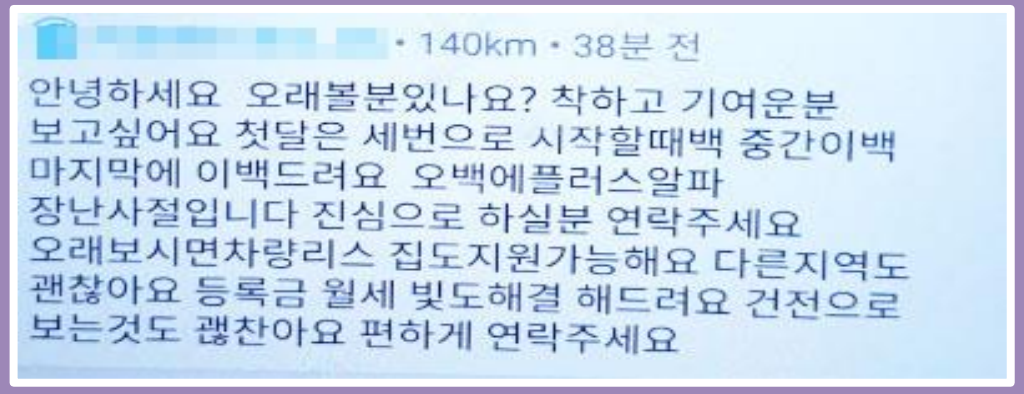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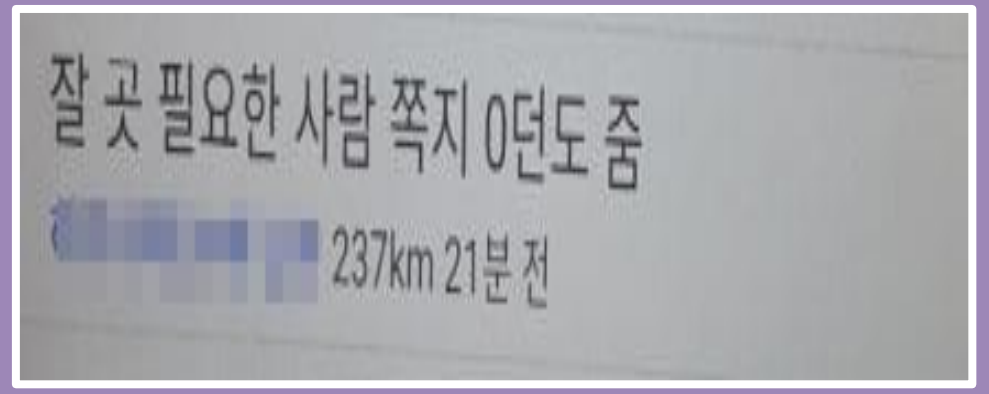

(2)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다른 플랫폼으로의 확산 및 연동

- 닉네임 혹은 채팅글에 타 SNS(라인,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트위터 등) 아이디를 적어 놓는 경우가 많으며, 원활한 대화, 영상공유, 대화저장 및 백업 기능 등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 SNS로 이동하거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과 병행하여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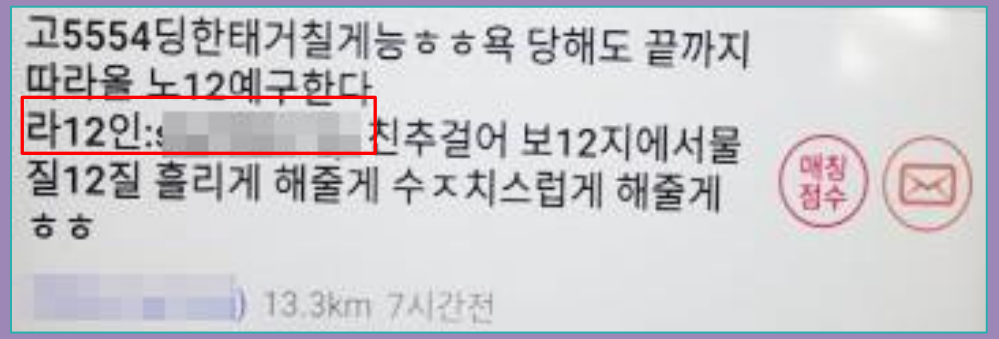

- 스마트폰 채팅 어플 내에서만 타 SNS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 밀집해 있는 다른 플랫폼(유튜브, 지식인, 트위터, 익명질문-ASKED, 텀블러 등)에서도 확산되어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라인 아이디를 비롯하여 타 SNS계정을 공유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후, 은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성착취가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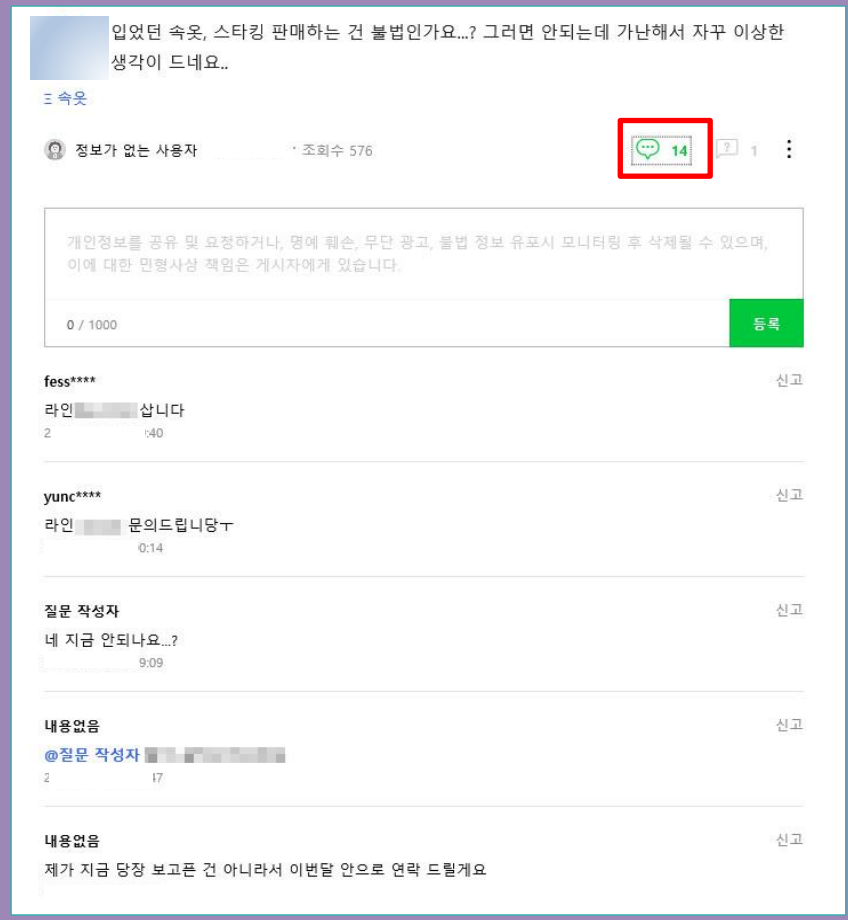

- 스마트폰 채팅 어플 내에서, 혹은 다른 SNS로 넘어간 후 주고받은 모든 내용들은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며, 온라인 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까지 이어진다. 이 뿐 아니라 그루밍과 협박을 통하여 갈취한 사진이나 영상, 신체정보 등을 묶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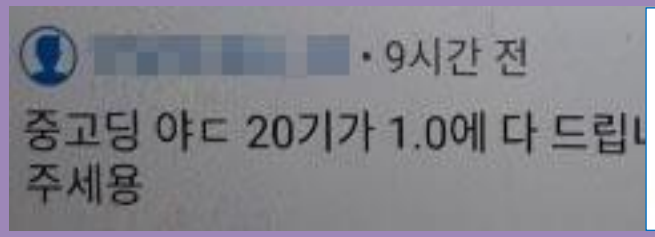
· 9시간 전
중고딩 야ㄷ 20기가 1.0에 다 드립
주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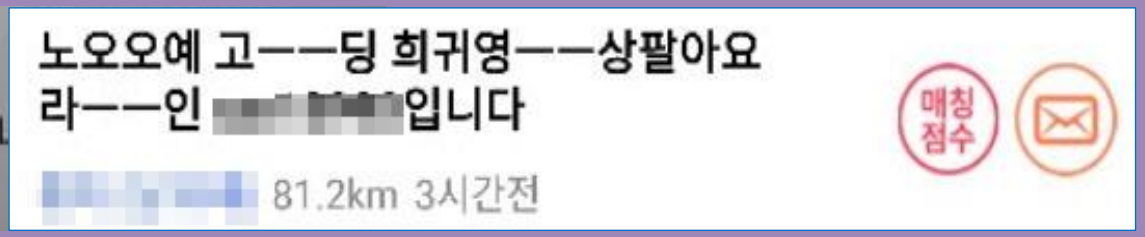
노오오예 고——딩 희귀영——상팔아요
라——인 입니다
81.2km 3시간전
매칭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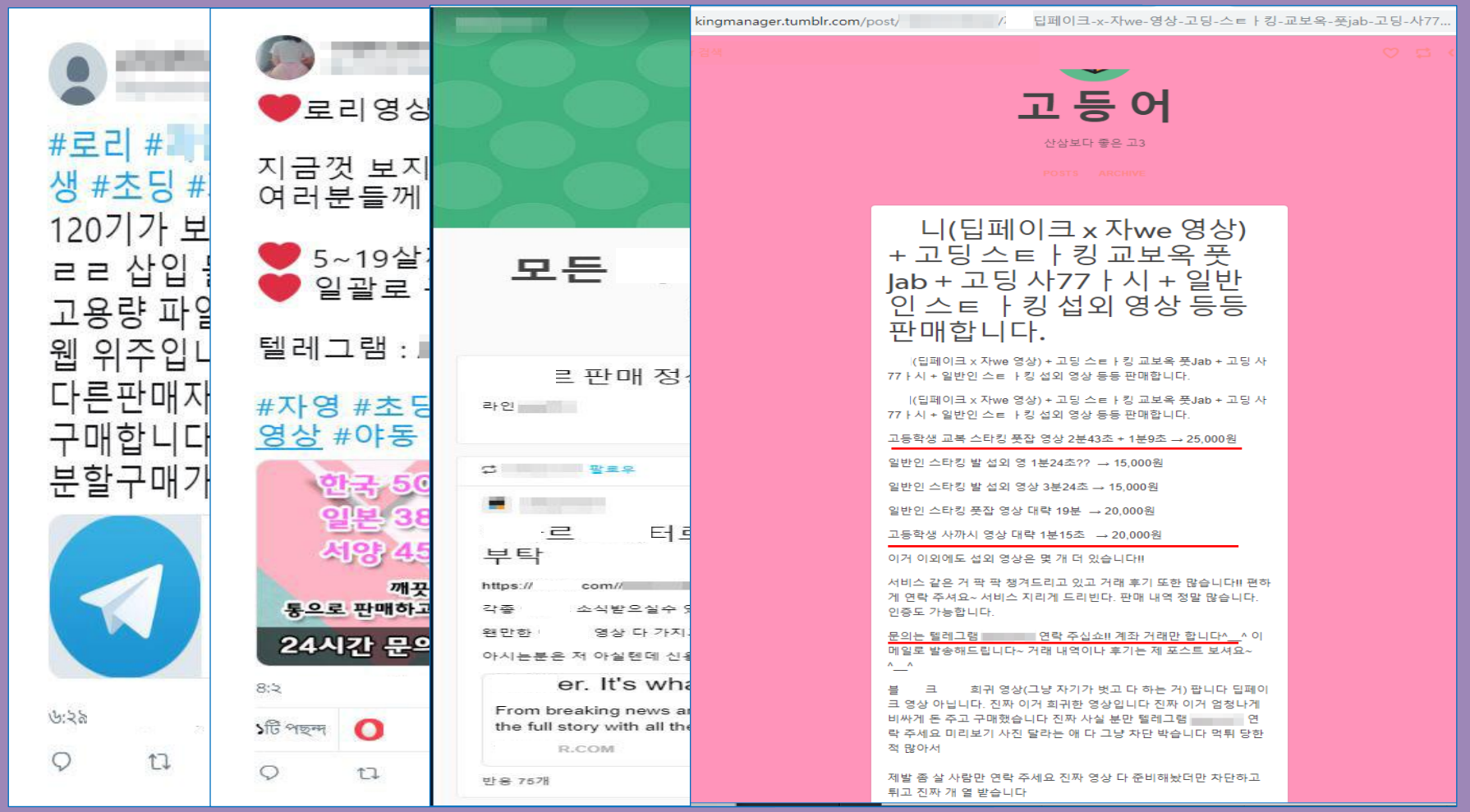
#로리 #
생 #초딩 #
120기가 보
ㄹㄹ 삽입
고용량 파일
웹 위주입니
다른판매자
구매합니다
분할구매가
로리영상
지금껏 보지
여러분들께
5~19살
일괄로
텔레그램 :
#자영 #초딩
영상 #야동
한국 50
일본 38
서양 45
깨끗
통으로 판매하고
24시간 문의
모든
ㄹ 판매 정
라인
팔로우
부탁
https:// com/
각종 소식받으실수
원만한 영상 다 가지
아시는분은 저 아실텐데
er. It's wha
From breaking news a
the full story with all the
R.COM
반응 75개
kingmanager.tumblr.com/post/ /: 딥페이크-x-자we-영상-고딩-스ㅌㅏ킹-교보옥-풋jab-고딩-사77...
고등어
산삼보다 좋은 고3
POSTS ARCHIVE
니(딥페이크 x 자we 영상) + 고딩 스ㅌㅏ킹 교보옥 풋 Jab + 고딩 사77ㅏ시 + 일반인 스ㅌ ㅏ킹 섭외 영상 등등 판매합니다.
(딥페이크 x 자we 영상) + 고딩 스ㅌㅏ킹 교보옥 풋Jab + 고딩 사77ㅏ시 + 일반인 스ㅌ ㅏ킹 섭외 영상 등등 판매합니다.
(딥페이크 x 자we 영상) + 고딩 스ㅌㅏ킹 교보옥 풋Jab + 고딩 사77ㅏ시 + 일반인 스ㅌ ㅏ킹 섭외 영상 등등 판매합니다.
고등학생 교복 스타킹 풋잡 영상 2분43초 + 1분9초 → 25,000원
일반인 스타킹 발 섭외 영 1분24초?? → 15,000원
일반인 스타킹 발 섭외 영상 3분24초 → 15,000원
일반인 스타킹 풋잡 영상 대략 19분 → 20,000원
고등학생 사까시 영상 대략 1분15초 → 20,000원
이거 이외에도 섭외 영상은 몇 개 더 있습니다!!
서비스 같은 거 팍 팍 챙겨드리고 있고 거래 후기 또한 많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셔요~ 서비스 지리게 드리빈다. 판매 내역 정말 많습니다. 인증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텔레그램 연락 주십쇼!! 계좌 거래만 합니다^__^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거래 내역이나 후기는 제 포스트 보셔요~ ^__^
블 크 희귀 영상(그냥 자기가 벗고 다 하는 거) 팝니다 딥페이크 영상 아닙니다. 진짜 이거 희귀한 영상입니다 진짜 이거 엄청나게 비싸게 돈 주고 구매했습니다 진짜 사실 분만 텔레그램 연락 주세요 미리보기 사진 달라는 애 다 그냥 차단 박습니다 먹튀 당한 적 많아서
제발 좀 살 사람만 연락 주세요 진짜 영상 다 준비해놨더만 차단하고 튀고 진짜 개 열 받습니다

● 개념정리 : 디지털 성범죄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유포(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소비(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상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 오프라인 세계 즉, 현실세계로 확장되어 실제적인 성폭력, 성매매 행위로까지 발현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를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한정시킨다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현실세계로까지 확장되어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이나 성범죄자 처벌에 있어 분절적인 시각으로 피해자나 가해자를 바라보게 되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확장하여야 한다.

● **디지털 성범죄 진행 과정**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 진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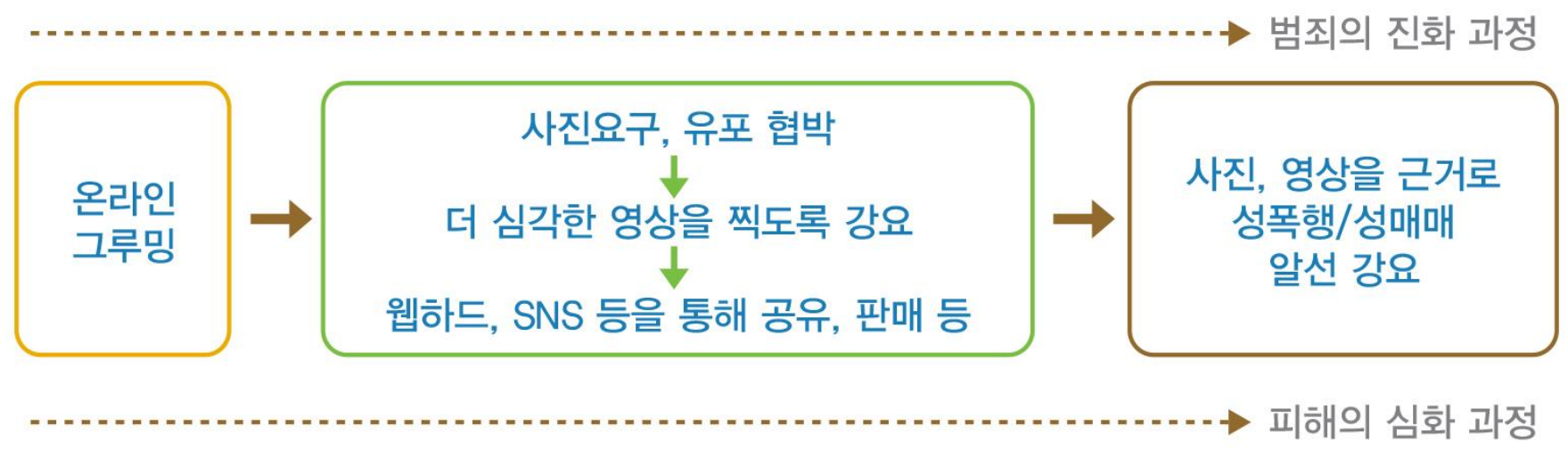

1)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이렇듯 동일 선상에서 심화 발전되는 범죄이다.

피해자가 성매매에 이용되기까지는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 아동·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인 여성도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동일한 과정을 거쳐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와 성폭력은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성폭력 상황에서 성매매 알선을 당하기도 하고, 성매매 알선 강요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2) 한국사회에서는 폭행이나 감금 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성폭력도 성매매도 피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상 피해자가 왜 자발적이 아닌지에 대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심지어 성매매의 경우는 범죄의 진화과정과 피해의 심화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과 강제로 분리하여 피해자와 범죄가담자로 구별하고 있다.

3)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착취 범죄는 1차적으로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고,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를 조종하는 범죄로써 폭력이나 감금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사관들은 강요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범죄의 상대방이 되었다고 본다. 이때 성매매의 경우, 눈에 보이는 폭력이나 감금이 없었다면 자발이라고 보고, 범죄가담자로서 피해자 본인이 처벌받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4) 한국사회는 가장 심각한 폭력단계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낙인찍어 고립시키고 있으며,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가해자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5) 〈표1〉과 같은 진행 과정을 통해 범죄가 진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것은 피해의 심화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겪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있을 수 있고, 각 단계별로 피해를 호소,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이 진행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성폭력/성매매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은 온라인 그루밍, 신체 사진/영상 요구, 유포협박, 유포, 판매, 피해자 개인정보(이름, 학교, SNS, 신체 사진/영상 등) 빌미의 성폭력, 성매매 알선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범죄의 단계마다 또는 전체 과정을 포괄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및 국회 앞 기자회견**

  2019년 1월 22일 (화) / 국회의사당 앞

  2019년 12월, 371개 단체 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공동대표 단체 및 사무국으로 활동

-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2019년 1월 28일 (월) / 법무부 앞

  2019년 12월, 371개 단체 연대

-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론관 기자회견**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삼화 의원실과 공동 기자회견
  2019년 1월 28일 (월) / 국회 정론관

-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랜딩페이지 오픈**

2019년 4월 17일 (수)
https://campaigns.kr/campaigns/151/pickets

관련 영상 및 자료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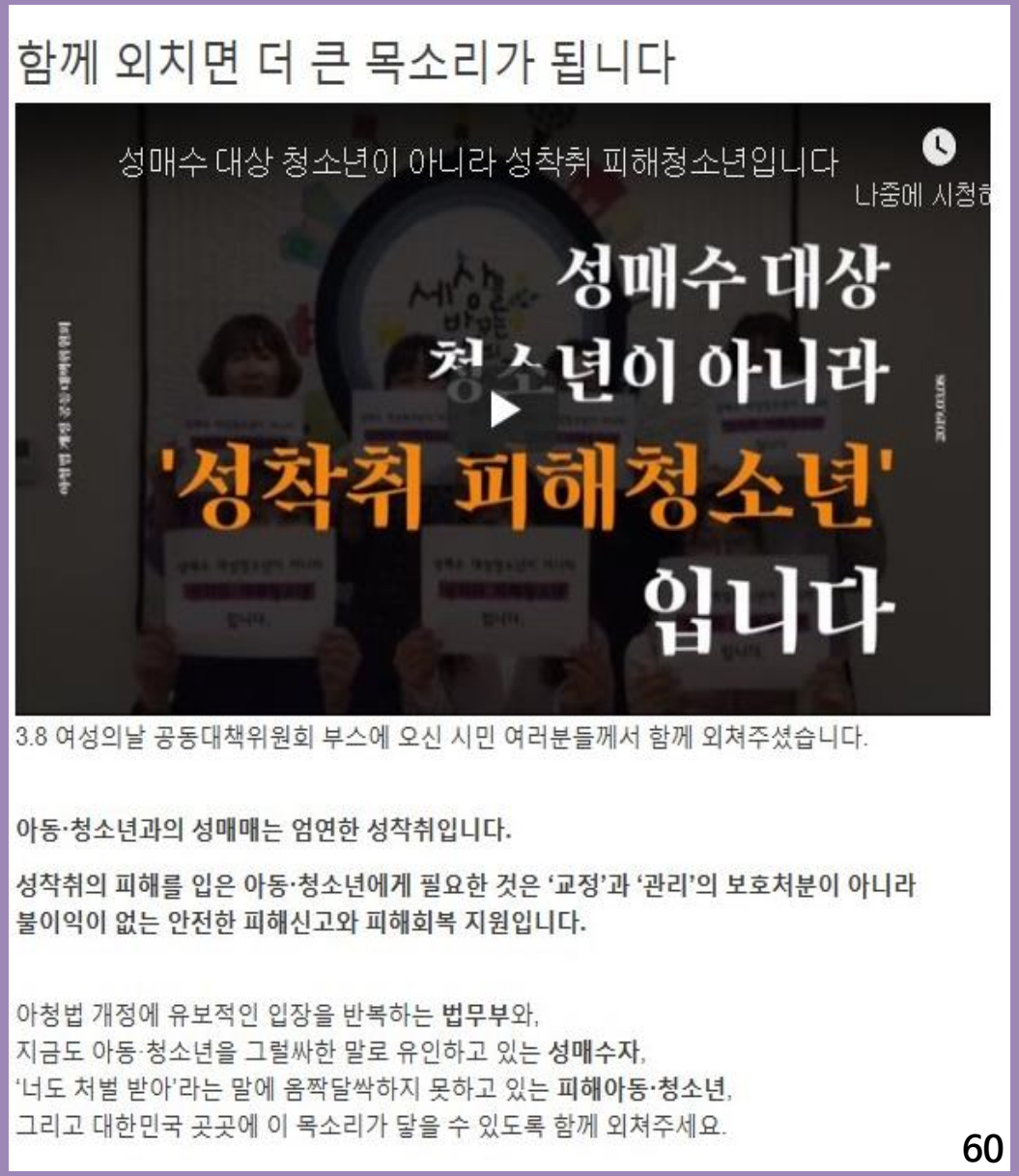

-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토론회 개최**

  남인순, 백혜련, 표창원, 김삼화 의원실과 공동주최

  2019년 6월 4일 (화)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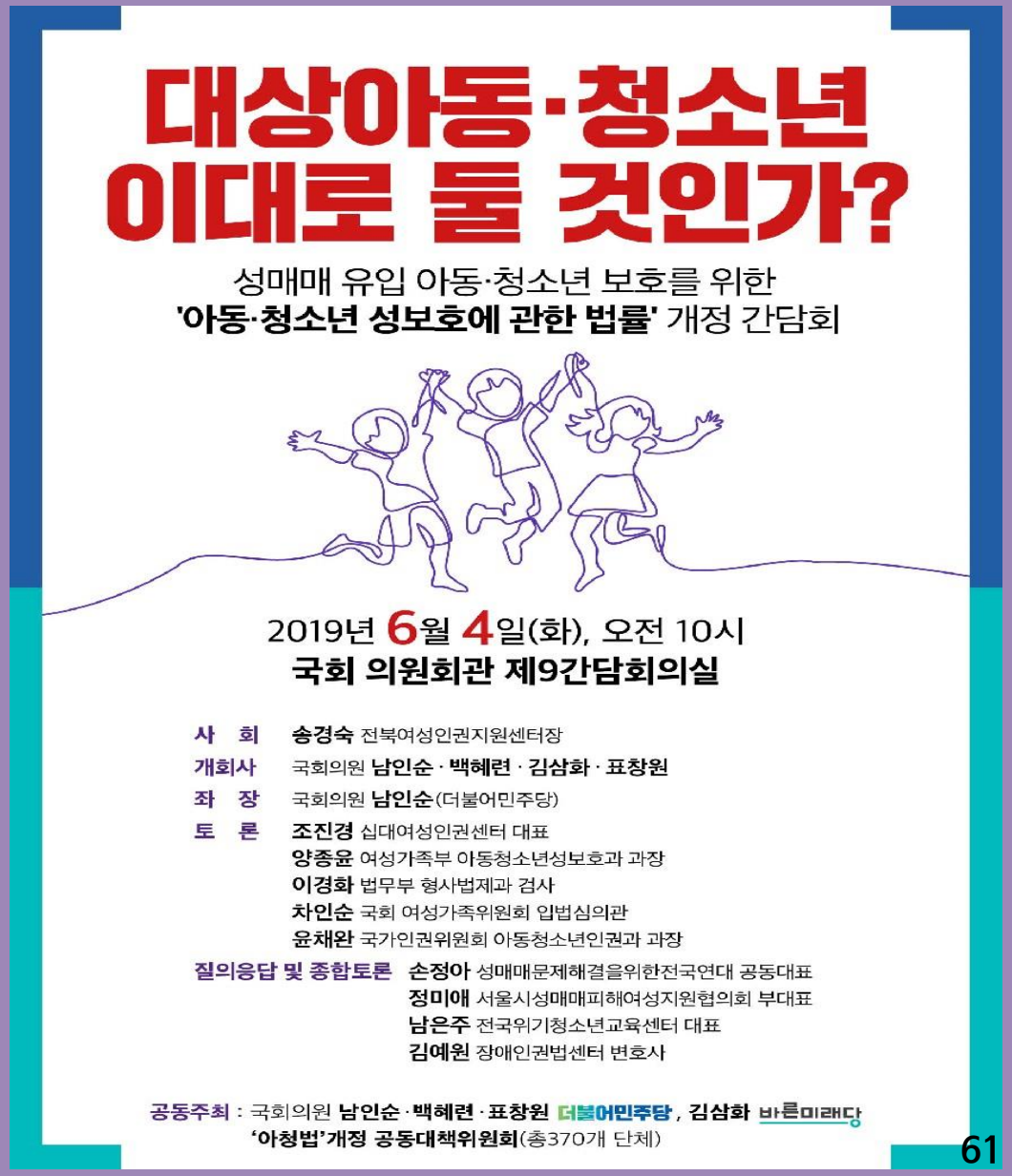

- **2019.7.17 채팅/소개팅 앱에 대한 연령등급 정책 변경 고지**

  - 센터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2019년 8월 원스토어는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 알선·유인하고 음란물 유통에 이용되고 있는 채팅앱/소개팅앱에 대하여 청소년 '이용불가등급' 으로 연령등급 정책을 변경

공지사항

[공지]채팅/소개팅 상품에 대한 연령등급 정책변경 고지

2019.07.17(UTC+09:00) | 조회수320

안녕하세요 원스토어 개발자센터입니다.

최근 '채팅'과 '소개팅' 상품을 악용(성매매, 음란물 유통)하는 사용되는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원스토어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채팅' 및 '소개팅' 등의 상품에 대한 정책을 변경 고지 하오니 관련 사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8월 19일부터 지인기반의 '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제외한 채팅/소개팅 상품은 향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이후 '청소년이용불가' 미만의 등급으로 등록/업데이트 요청한 상품은 반려 또는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2019년 8월 19일 이전 등록된 상기 채팅/소개팅 상품은 반드시 8월 19일 까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 2019년 8월 19일 까지 등급변경이 되지 않은 채팅/소개팅 상품의 경우, 원스토어 개발자센터는 직권으로 해당 상품의 등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등급 변경 경로 : 개발자센터 > Apps > 상품선택 > 카테고리 항목 > 이용등급 변경 후 저장 (앱은 등급 분류번호 미필요)

청소년의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개발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devhelper@onestore.co.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아청법 개정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성명**

2019년 10월 1일 ~2019년 10월 24일

(총 16차 릴레이 성명 발표)

- 2019.10.01 한국여성변호사회 "성착취 피해아동을 대상청소년으로 처벌하는 아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 2019.10.02 사단법인 두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내 모든 아동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라."
- 2019.10.04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한민국은 모든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당사국의 책무를 이행하라"
- 2019.10.07 장애인권법센터 "국회는 성착취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2019.10.08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대상아동·청소년' 삭제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법안의 국회 즉각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 2019.10.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 2019.10.11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국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조속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 2019.10.14 탁틴내일 ECPAT KOREA "'성매수 대상 청소년'이 아닌 '성범죄 피해 청소
- 2019.10.15 공익법센터 어필 "성착취 인신매매에 이용된 아동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법무부는 해당 아동에 대한 '처벌'이 아닌 '보호대책안'을 마련하라."
- 2019.10.16 한국젠더법학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 2019.1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의 구분은 폐지되어야 한다."
- 2019.10.18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으로서의 개정을 촉구한다."
- 2019.10.21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국회는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하는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 2019.10.22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 하여 성착취피해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
- 2019.10.23 한국YMCA전국연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 2019.10.24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한민국은 모든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당사국의 책무를 이행하라."

- **2019년 다크웹 성착취 영상 사이트 'Welcome to Video' 운영자 손정우 국제공조 검거 발표**

2019년/ 세계최대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 영상물 공유, 유통, 판매 사이트
"Welcome to Video"를 운영한 '손정우'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사건 :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유통, 판매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크웹 사이트를 해외 32개국과 공조수사 한 후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 3월,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가 한국인(손정우)으로 밝혀져 검거된 후에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 영상물을 유통 및 소지한 38개국의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한 결과, 검거된 337명의 이용자 중 223명이 한국인 이용자임이 밝혀졌다.

-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문형욱, 안승진, 이원호 등 검거**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n번방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건이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한다. 회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명, 박사방 유료회원 3만명 내지 수만명으로 추정한다. 피해자 숫자는 '박사방'의 경우 확인된 경우만 최소 74명, 그중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이다.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N%EB%B2%88%EB%B0%A9_%EC%82%AC%EA%B1%B4

- **십대여성인권센터 × 씨리얼, 한국일보, 세계일보, 여성가족부 영상제작**

2020 죽어도 안 바뀌는 법을 먹고 자란 N번방
https://www.youtube.com/watch?v=H_UCGo-pwWE

2020 “신고해봐, 너도 처벌 받아” 성착취 피해자들이 신고 못하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ik2Bp8bZgag

2020 [디지털 성범죄 대처법] 만약 내가 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https://www.youtube.com/watch?v=67XckwE6YnE

2020 랜덤채팅앱이 위험한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qxzptNvx2y4

2020 디지털성범죄 OUT｜가해자 처벌 강화｜신상공개 확대 등｜텔레그램 N번방
https://www.youtube.com/watch?v=7bMTU8ziSbY

-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아청법 개정 국회 통과

2020년 04월 30일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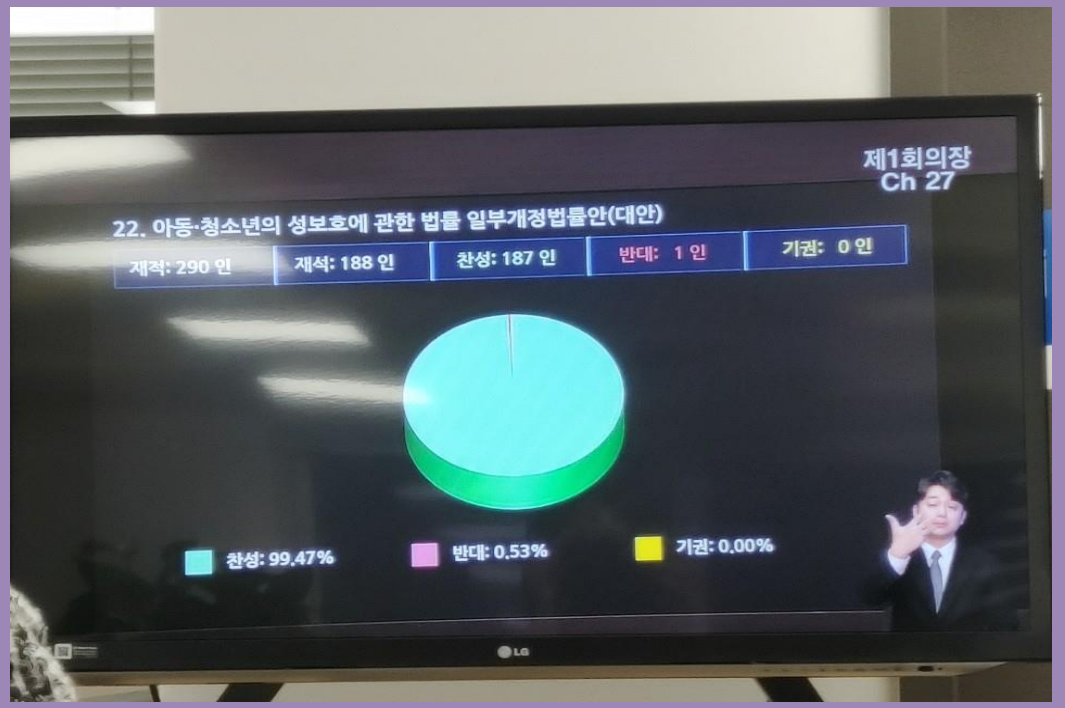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2021년부터 신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대상 아동 · 청소년'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됨

- 성매매로 유입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조기 발견,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 · 자활, 치료 · 회복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운영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내용

유형	주요 내용
신고 접수	• 성매매 관련 범죄 신고 접수
아웃리치	• 인터넷 카페, SNS 등 온라인 아웃리치 활동
긴급구조	• 긴급지원 및 일시 보호(교통비, 일반숙박비 등) • 청소년상담1388 통합콜센터 및 청소년쉼터 등 보호 체계 연계
상담 지원	• 1:1 개별상담 • 부모 및 가족 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의료지원	•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진료 및 처방 지원 • 치료비 지원 및 병원 동행
법률 지원	• 법률 지원 연계 및 정보 제공 • 경찰서 및 법원 동행, 소견서 및 청원서 제출
학업 지원	• 일반 및 특수학교 복학·진학 정보 제공 • 검정고시 원서접수기관 및 관련 정보 제공(청소년지원시설 연계)
자립 지원	• 직업학교, 취업 기관 등 관련 기관 정보 제공 • 청소년 인턴십센터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연계
전문 멘토	• 전문상담사가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진로상담 등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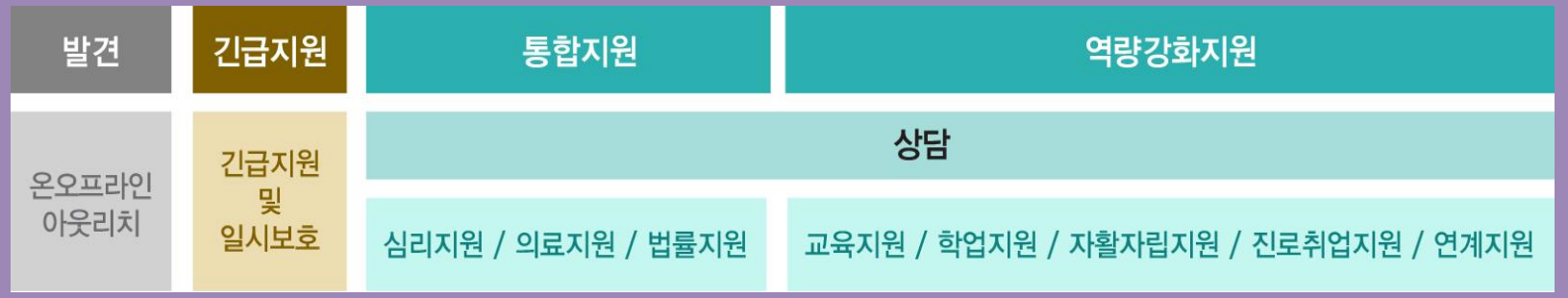

7.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11. 20. 시행됨)

가. 피해아동 · 청소년에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6호)

나. 대상아동 · 청소년의 정의 규정과 대상아동 · 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7호,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다. 장애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제13조제3항 신설)

라.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 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제20조제3항제1호)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38조)

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2호, 2021. 3.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 · 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아동 ·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 · 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함(제13조제2항).

나.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제15조의2 신설).

다.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수입 · 수출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도록 함(제20조제4항제2호).

라. 아동 ·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함(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제3조 제1항, 제4조제1항 · 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

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제6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바.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15조의2 신설)

형법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제305조제2항 신설)

나.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305조의3 신설)

감사합니다

강의내용 더 자세히 읽어보기

<5BC6EDC1FDBABB20C3D6C1BE5D20B9FDB7FCC1F6BFF8B4DC20C5E4B7D0C8B8202D20BEC6C3BBB9FD20BDC3C7E02031B3E220C6F2B0A1202D20313231362E687770> (teen-up.com)